

경험이 풍부한 해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해선박에 대하여 수로조사 및 수로도·서지등 항행통보사항을 수시 제공하며 해상의 기상상태를 신속히 측정하여 전달할 수 있는 해상기상 장비의 확충등 해상교통안전 정보체제를 강화하고 해상교통안전에 대한 홍보와 지도 감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해양사고중 중·소형 선박의 연안에서의 사고가 80%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은 척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안의 교통량은 실질적으로 중·소형 선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박에 대한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규제완화와는 반대로 해상의 안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 8. 중국의 세이프가드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무역구제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해사법학과 박문진  
지도교수 황정원

세이프가드조치는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며 그러한 시장개방에 의해 유입되는 수입품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개방화 추세로 발전되어 가는 현재의 국제통상체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04년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과 동해 3월에 개정된 세이프가드조치조례를 중심으로 하고, 이에 앞서 제정된 관련법규 및 규정을 연구범위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WTO체제하의 세이프가드제도 개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WTO가입협상에서의 중국의 약속과 중국의 세이프가드제도를 개괄적으로 검토하며, 중국의 세이프가드조례의 제정과 법령체제 및 운영기관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 제5장 세이프가드조치의 절차, 제6장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범위, 제7장에서는 세이프가드조치의 효과 등을 고찰한다.

제8장에서는 현재까지 중국의 유일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사례인 일부 수입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며,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제9장에서는 중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지려고 한다.

본 논문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비교법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세이프가드조례와 한국무역구제법을 비교함으로써

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현행 중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당한 개선방안 혹은 입법방향을 모색하고 자 한다.

둘째, 법해석학에 입각하여 중국의 세이프가드조례의 원리와 법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입법 취지, 배경, 연혁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함은 물론, 기타의 법률, 법규의 규정들을 연관하여 해석함으로써 법조문의 의미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있어 WTO규범을 준수하고 있고, 일부 규정은 그 이상으로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WTO가입을 맞이하면서 시급하게 입법화하고 또한 운영실천의 부족으로 내용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바,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도 보다 완벽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 개선상황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기관의 업무독립성이 필요하다. 엄격하게 볼 때 조사기관은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국내법규와 국제규범을 적용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거나 어떤 사항의 법적합성을 판단함으로써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사법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의 최고목표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존부를 가려내고 객관적 진실을 바탕으로 법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상무부 소속의 행정기관이 세이프가드조치조사를 담당하고 있고, 세이프가드조치의 법규 및 세부적인 규정도 상무부의 명의로 공포되고 있어 사실상 조사기관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사 및 판정의 공정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행정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하거나 독립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운영기관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과거 중국의 세이프가드조치 조사기관은 수입증가조사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국내산업 피해조사를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각각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였으나, 2003년 3월 국무원의 조직기구개혁으로 세이프가드조치조사를 비롯한 무역구제기관이 새로 출범한 상무부 소속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상무부조직 내부에서 수입증가조사는 수출입공정무역국, 국내산업 피해조사는 산업 피해조사국으로 나누어져 있고 양개 조사기관의 관련부처는 무려 17개 처, 1실에 달하는 등 방대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어 무역구제정책운영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을 위해서는 조사기관조직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조사기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상무부 소속 행정직 공무원이 조사 및 판정을 담당하고 있다. 즉 조사인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전혀 규정이 없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진술회나 공청회에서 참고사항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기관은 관련법규를 해석하고 그 사건과 관련된 무역, 산업 및 기업경영지표 등을 분석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등 법률, 무역, 회계 등 분야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활용 및 보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조사 및 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무역구제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투명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무역구제조치는 모두 WTO에 통보되고 조치의 내용이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대국가로부터 WTO에 제소 당하게 되거나 무역보복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은 WTO규범에 위배되는 법률법규를 정리하고,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법률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로서 그동안 관련법규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컸었다. 따라서 향후 정보공개규칙 및 정보열람규칙 등을 제정하여 세이프가드조치 조사 및 판정에서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FTA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하여 FTA체결에 따른 특례조항 검토제도 등에 대한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무역환경 분야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 9. 불법어업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해사법학과 이 남 우  
지도교수 이 경 호

우리나라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국민의 중요한 식량산업이며, 특히 동물성 단백질의 40%를 공급하는 주요한 산업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수산물의 소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수산자원은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無主物이 아니며 누구나 이용권을 갖는 공동소유의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관리 자원으로 하여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하는 것이다.

수산자원은 이제 국제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자원이용을 위한 인류의 관리 노력에 따라 회복과 멸종의 갈림길에 놓여있고 수산업의 존재도 자원관리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어업단속과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어업근절 없이는 그 어떠한 수산정책을 수립하더라도 그 효과는 반감 될 수밖에 없다.

불법어업은 수산업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요인이 결부되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어 연근해어장의 어업자원은 최대 지속적 생산량의 한계를 넘어 고갈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산관계법제도상의 문제점과 수산업발전을 저해시켜온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상되고 있는 미래상황을 예측하면서 종합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며 현재의 시점에서 불법어업근절, 즉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관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정책전환을 서두르지 않으면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무분별한